

개 정 수 의 사 법

제 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법은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의사”라 함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농림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동물”이라 함은 소·말·돼지·양·개·토기·고양이·가금·꿀벌 어패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동물진료업”이라 함은 동물을 진료(동물의 사체에 대한 검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라 함은 동물진료업을 행하는 장소로서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제 3조(직무)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의 위생검사에 종사함을 그 직무로 한다.

제 2장 수 의 사

제 4조 수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 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질환자·정신지체자
2. (삭 제)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마약·대마 기타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수의사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 6조(면허의 등록) ① 농림수산부장관은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한 때에는 면허에 관한 사항을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그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면허의 등록과 면허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 7조(삭 제)

제 8조(수의사국가시험) ① 수의사국가시험은 매년 농림수산부장관이 이를 시행한다.

② 수의사국가시험은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수의학과 수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공중위생에 관한 지식 및 기능에 대하여 행한다.

③ 농림수산부장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수의사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9조(응시자격)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제 5조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의학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하고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

2. 농림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학을 전공하고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

3.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 이외의 외국에서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
제 9조의 2(수험자의 부정행위) ① 부정한 방법으로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수의사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 10조(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의 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어패류의 진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1조(진료의 거부금지) 동물진료업을 영위하는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2조(진단서 등) ① 수의사는 자기가 진료 또는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나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하며 극·독약 및 생물학적 제제의 처방·투약을 하지 못한다. 다만, 어패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중 폐사한 경우 교부하는 폐사진단서는 다른 수의사로 부터 교부받을 수 있다.

③ 수의사는 그가 진료 또는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교부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3조(진료부 및 검안부) ① 수의사는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비치하고 진료 또는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는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 14조(신고) 수의사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15조(진료기술의 보호)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6조(기구 등의 우선공급) 수의사는 진료행위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3장 동물 병원

제 17조(개설) ① 수의사는 이 법에 의한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행할 수 없다.

② 동물병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이를 개설할 수 없다.

1. 수의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을 설립한 법인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5.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 제 2항 제 1호 내지 제 4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 2항 제 5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7조의 2(동물병원의 관리의무) ① 수의사는 1개소의 동물병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 동물병원개설자는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병원개설자 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동물병원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그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수의사중에서 동물병원을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동물병원개설자는 수의사면허증(제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병원을 관리할 수의사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수의사의 수의사면허증을 포함한다) 및 동물병원개설 허가증 또는 동물병원개설신고필증을 동물병원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18조(휴업·폐업의 신고) 동물병원의 개설자는 동물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동물병원이 아니면 동물병원의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0조(진료보수) 동물병원의 진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 21조(공수의) ①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동물진료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1. 동물의 진료
2. 동물질병의 조사연구
3. 동물전염병의 예찰·예방 및 치료
4. 동물의 건강진단
5. 동물의 부건증진과 환경위생관리
6. 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진료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는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행한다.

③ 공수의의 위촉과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 22조(공수의 수당 및 여비) 공수의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 4 장 수 의 사 회

제 23조(설립) ① 수의사는 수의업무의 적정과 수의학술의 연구·보급 및 수의사의 윤리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수의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회가 설립된 때에는 수의사는 당연히 수의사회의 회원이 된다.

제 24조(설립인가) 수의사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필요한 서류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25조(지부) ① 수의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수의사회가 지부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부의 책임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26조(민법의 준용) 수의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27조(협조의무와 위탁) ① 수의사회는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로부터 동물진료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 및 공중위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사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 28조(감독) 농림수산부장관은 수의사회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동물 보건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 2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관의 변경 또는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 29조(경비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보건향상과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 2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의사회의 운영 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 5장 감독

제 30조(지도와 명령) ① 농림수산부장관은 동물의 진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보건사회부장관은 인수공통전염병의 방역과 진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31조(보고 및 업무감독) ①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수의사·동물병원 또는 수의사회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시설 또는 진료부 및 검안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 32조(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① 농림수산부장관은 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 및 제 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 5조 제 1호·제 3호 및 제 4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효력의 정지기간중에 수의업무를 행하거나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3회이상 면허효력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4. 면허증을 대여한 때

② 농림수산부장관은 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년이내의 범위안에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제 3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거부한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제 34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③ 농림수산부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면허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

1. 제 1항 제 1호의 사유로 현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때
2. 제 1항 제 2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 다만,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3. 제 1항 제 3호 및 제 4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한 때
제 33조(개설허가의 취소 등) 도지사는 동물병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동물진료업을 정지하거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무자격자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때
 3. 제 17조 제 3항 및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와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폐업의 신고를 그 사실이 발생한 후 30일이내에 하지 아니한 때
 4.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 6장 보 칙

제 34조(연수교육) ① 농림수산부장은 수의사에 대하여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 35조(과대광고의 금지)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은 진료업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6조(청문)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 32조 제 1항·제 2항 또는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7조(권한위임) 농림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38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장 벌 칙

제 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 6조 제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의사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
 2. 제 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물을 진료한 자
- 제 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동물의 진료요구를 거부한 자
 2. 제 17조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
 3. 제 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물병원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제 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 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가 진료 또는 검안을 하지 아니하고 진단서나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극·독약 또는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투약한 자
 2. 제 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진료 또는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3. 제 17조의 2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4. 제 17조의 2 제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물병원개설자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물병원을 관리하게 할 자는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한 자
 5. 제 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물병원의 휴업·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 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대광고를 한 자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2조(수의사시험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 9조 제 1호의 경과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이전에 대학에 입학한 자가 그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때에는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제 3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동물병원을 개설한 대학부설동물병원은 이 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제 4조(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 5조(다른 법률에서의 이 법 인용)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의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